전세자금대출 보증상품별 비교안내문



| ÷) п | 전세자금대출 보증상품 제공기관 | | |
|---|---|---|--|
| 항 목 | 한국주택금융공사 | 서울보증보험 | 주택도시보증공사 |
| 전세자금대출 보증대상 | 전세금 수도권 4 억원 이하 지방 2 억원 이하 | 전세금 제한없음 | 전세금 수도권 4 억원 이하 지방 3 억원 이하 |
| 은행의 대출한도 | 최대 222백만원 | 최대 500백만원 | 최대 320백만원 지방 240백만원 |
| 보험(보증)료 부담 주체 | 채무자 | 은행 | 채무자 |
| 채권보전 절차 (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) ^{주1)} | 원칙적으로 없으며, 필요시^{주2}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· 동 사실을 임대인 에게 통지^{주3)} |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· 동 사실을 임대인 에게 통지^{주3)} | · 채권양도 · 동 사실을 임대인 에게 통지 ^{주4)} |
| 임대인에게 질권설정통지서(채권 양도통자) 수령 여부를 유선확인 ^{주5)} | - | 필요 * 임대인이 유선 확인을 거부할 경우 보증서 발급 안 됨 | 필요 * 임대인이 유선 확인을 거부할 경우 보증서 발급 안 됨 |
|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 ^{주6)} | 임대인에게 확인 |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확인 | 등록 공인중개업자를 통해 확인 |
| 은행의 권리보험 ^{주7)} 가입 | 선택(대부분 가입) *은행의 권리보험 미가입시 에도 보증서 발급 가능 | 필요 *은행의 권리보험 미가입시 보증서 발급 안 됨 | 필요 *은행이 권리보험에 자체 가입 |

- 주1) 은행과 임차인(차주)간 별도의 질권설정계약(채권양도계약)을 체결(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임차인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간 채권양도계약 체결)
 - 2) 보증한도를 더 높이기 위해 질권설정(또는 채권양도)을 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음
 - 3) 임대인에게 통지서 발송이 곤란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신속히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로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 가 되는 경우 등에는 질권설정승낙서(채권양도계약세)에 임대인의 확인(서명)을 받는 경우도 있음
 - 4) 임대인에게 통지서 발송이 곤란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신속히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로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가 되는 경우 등에는 채권양도계약서에 임대인의 확인(서명)을 받는 경우도 있음
 - 5)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차원의 절차임
 - 6) 은행측이 임대인(또는 임차인 등)과 대면하여 서명을 받거나 유선을 통해 확인
 - 7)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통한 사기대출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로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이 별도로 가입하는 보험



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스마트 고객상담부(1588-9999)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 이지 (www.kbstar.com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